

휴양림내국유지와교환등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0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0. 13

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0. 10

(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재부과장 허 길 중

나. 제안사유

- 수만리지구 생태숲 조성 예정지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생태숲 및 연못등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를 도모하고,
-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백아산자연 휴양림내와 운주사 주변에 있어 도암면 위치리에 있는 군유림과 교환을 추진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토지취득 및 처분계획

(단위:m',천원)

구분	사업명	토지소재지			필지수	지목	취득면적	재산가액 (공시지가)	비고
		읍면	리	지번					
취득	소계				16		59,610	455,000	
	수만리 생태숲 사유토지 매입	화순	수만	711번지 외13	14	임야 (전)	57,359	455,000	
		화순	유천	1번지의외1	2	답	2,251		
취득	소계				5		1,074,459	216,329	
	백아산휴양림지구내국유지매입	북	노치	산63	1	임야	987,781	195,581	
		운주사지구내국유지매입	도암	용강	산7번지 외3	4	임야	86,678	20,784
매각 (교환)	우치리 군유지 매각	도암	우치	산89-1	1	임야	1,521,322	220,592	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헌범)

- 본 안건은 수만리 생태 숲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우치리 균유지와 백아신 휴양림 지구내 국유지, 운주사 지구내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입니다.

- 본 건에 대한 법령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결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**첨 부 : 휴양림내국유지와교환등을위한공유재산
관리계획변경안**